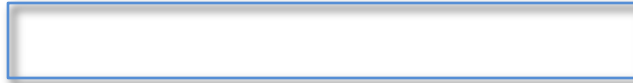


합덕인더스파크

산업시설용지 분양안내

(주)인더스파크

Contents



I 사업개요

II 분양현황

III 입지환경

1. 개요
2. 도로망
3. 철도망
4. 항만

IV 지원사항

1. 세제지원
2. 보조금지원

V 분양가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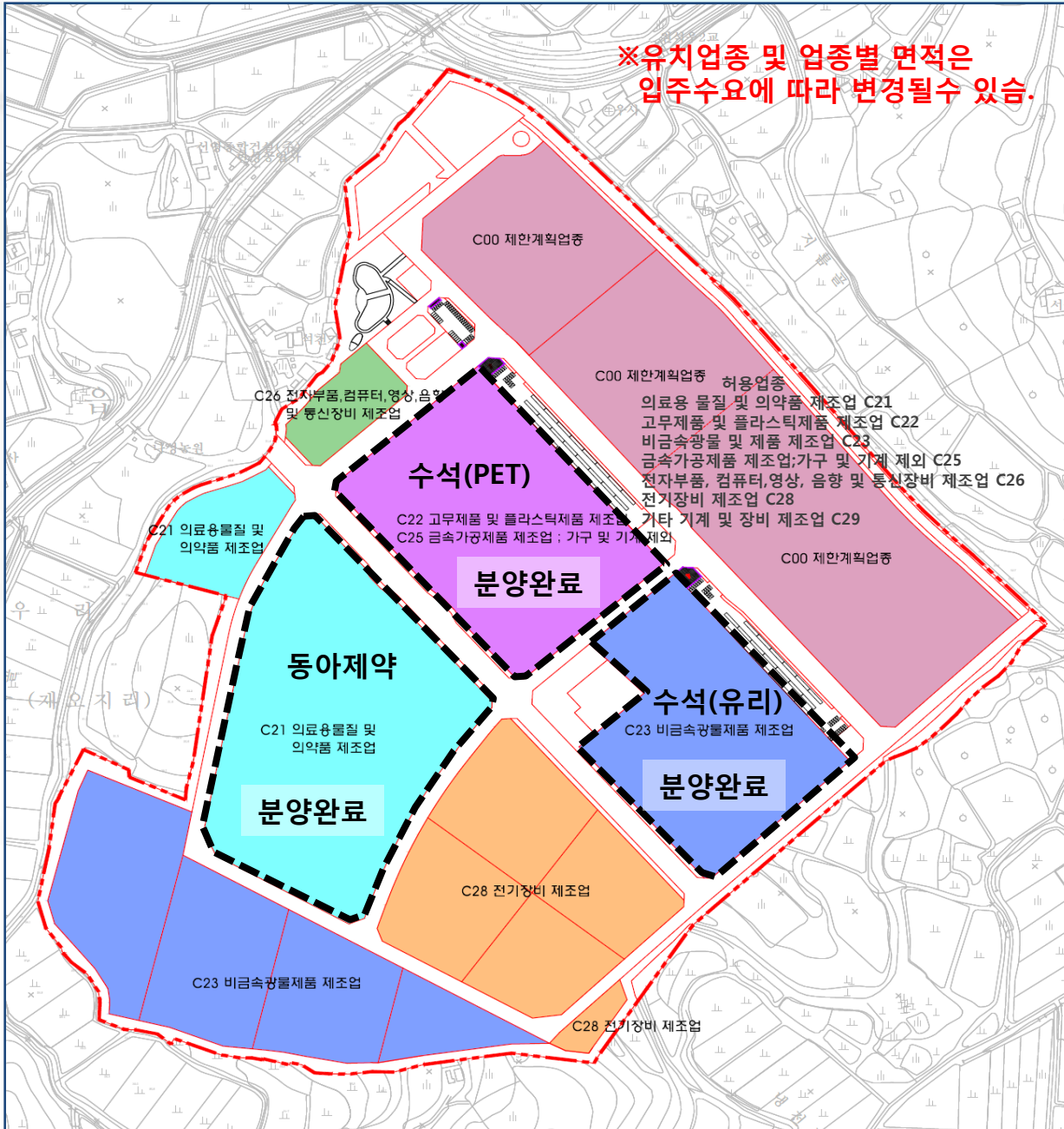


개요

- 명 칭 : 합덕인더스파크(일반산업단지)
- 위 치 :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, 대전리 일원
- 면 적 : 636,047.7㎡(19만2천평)
- 개발기간 : 2010년 ~ 2016년

추진일정

- 2010.03 (주)인더스파크 설립
- 2011.09 산업단지계획 승인
- 2013.10 공사 착수
- 2014.03 산업시설용지 분양실시
- 2016.09 단지조성공사 완료
- 2016.12 사업준공



분양완료

업체	면적
동아제약(주)	23,129평
(주)수석	31,885평
계	55,014평

분양중

업종	면적
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3,834평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21,609평
전기장비 제조업	18,547평
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2,502평
업종추가 (단지내 업종)	39,148평
계	85,640평



입 지

- 당진-대전간 고속도로
고덕IC 5분
- 서해안고속도로
당진IC 15분
- 국도
32호선 / 34호선
- 항만
당진항 20분
- 행정
수도권 및 충남주요도시와
1시간 이내 생활권
당진시청 12Km
내포신도시 15K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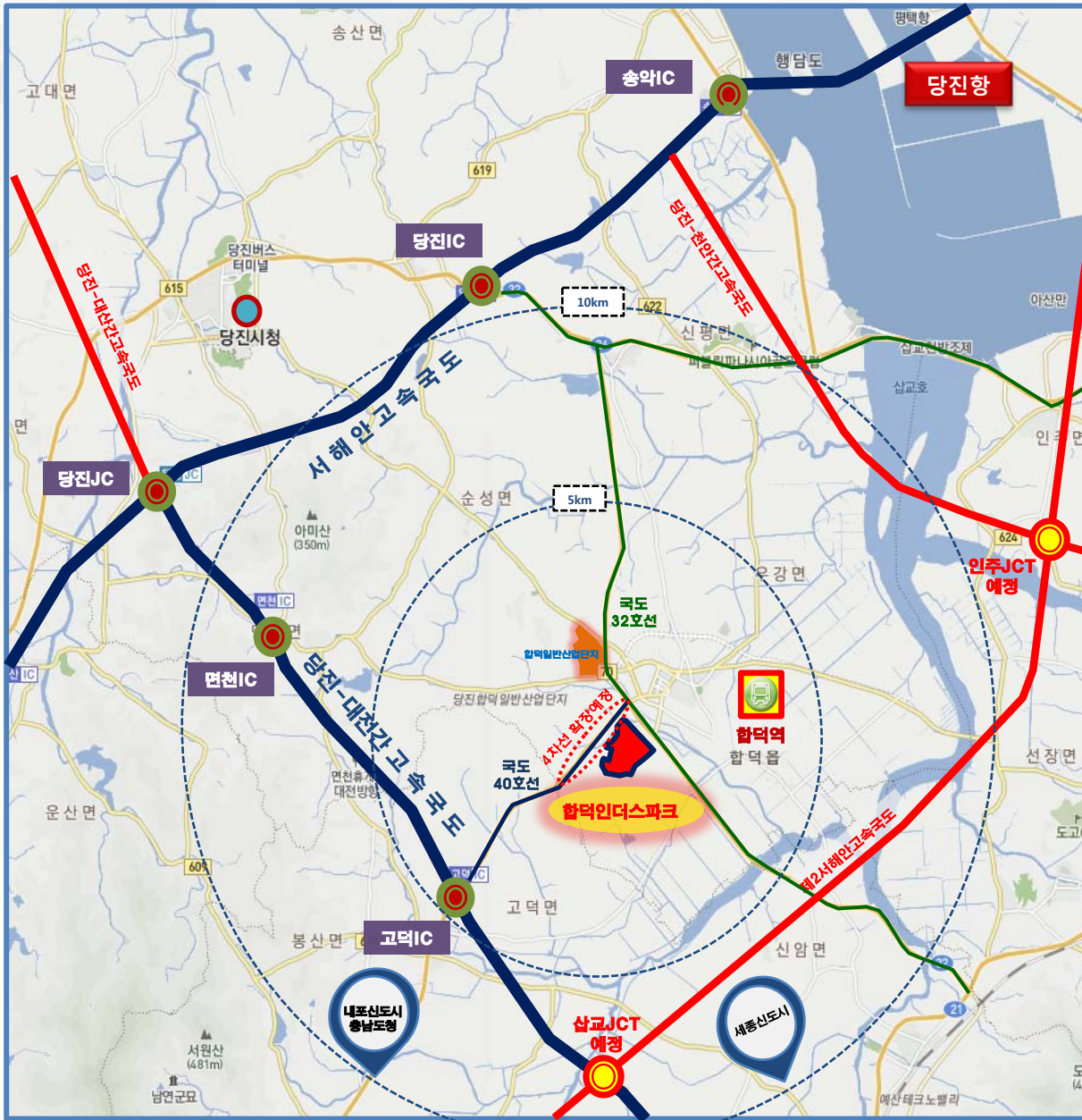
개발계획

- 서해안복선전철
합덕역 5분
수도권 전철 환승
출퇴근 가능
- 제2서해안고속도로
평택-익산간 부분별 개통
인주JCT / 삼교JCT
- 산단 진출입 국도40 확장
- 당진-천안간 고속도로
- 당진-대산간 고속도로
- 아산산단 인입철도
합덕-아산산단



인프라

- 인력
당진시 충남도내
인구증가 1위
(인근도시 포함 52만명)
충남도 행정중심 도시
내포신도시(20분)
인력수급 원활
- 전력
당진화력 : 6,000MW
GS EPS : 1,500MW
현대그린파워 : 800MW
- 용수
공업용수 : 22,354톤/일
생활용수 : 21,070톤/일



▶ 개통예정



제2서해안
고속국도 노선

- 제2서해안고속도로
평택-부여/익산(2022년)
구간별착공

▶ 건설추진

- 당진-천안간고속도로
- 당진-대산간고속도로

▶ 접근성

- 고덕IC(5분)
- 당진IC(15분)

▶ 주요도시

- 내포신도시(충남도청)
15km/20분
- 세종신도시
70km/50분

포송 JCT

인주 JCT

삼교 JCT

서부여 JCT



서해선 복선전철 노선

- 초지역
수도권 4호선 연결
원시~소사 (2018년 개통예정)
- 원시역
- USKR역
- 송산역
- 화성시청역
- 향남역
- 안중역
- 인주역
- 합덕역
- 예산역
- 홍성역 (장항선연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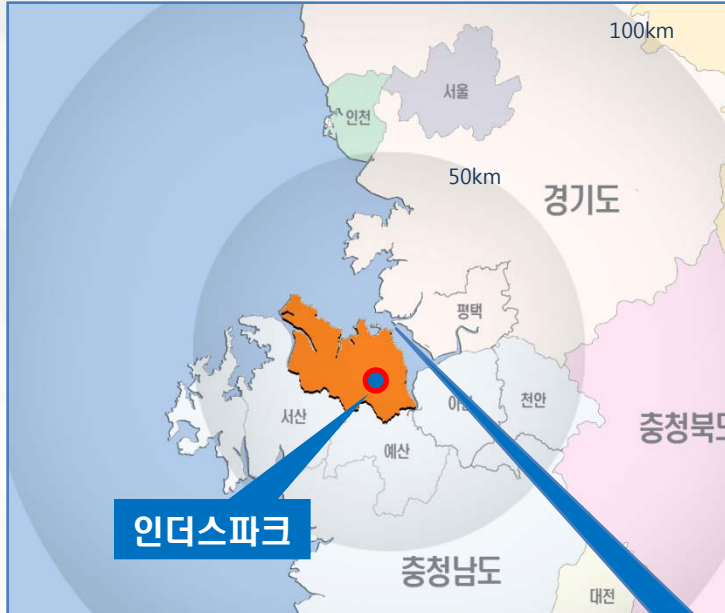
▶ 개통예정

- 서해선복선전철(시속 250km)
화성-홍성 (2015년~2020년)
인더스파크에서 합덕역 거리
→ 4km
- 수도권 출퇴근 가능
서울 ~ 합덕역 50분소요
(신안산선 2023년 완전개통 시)

▶ 건설추진

- 아산산단 인입철도
합덕-아산산단
(2016~2020년 착수)

당진항



인더스파크

- 서울 60분
- 대전 70분
- 천안 40분
- 인천국제공항 80분
- 청주국제공항 80분



대중국 최단거리, 수도권에 인접하고 접근교통망 편리



- 항만종류 제1종 지정항만(무역항)
- 구성 송악(현대)부두, 고대부두, 서부두, 당진화력부두
- 항로 거리 30km, 폭 0.4~1.0km, 수심 11~18m (항내 수면적 97.2km²)
- 접안능력 28선석, 하역능력 5,592만톤
- 성장속도 연간30% 이상의 물동량 증가로 전국 1위

개발계획

- 남부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중국 교류 및 권역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육성
- 부두와 항만 배후지, 산업단지가 연계된 항만물류클러스터를 구축
- 선박 접안시설 및 하역능력 확대 : 14선석(하역능력 2,633만톤) 추가 건설로 총 42선석(8,225만톤)건설예정
- 임항 교통시설 확대 : 신평~내항간 연결도로 건설 (교량 3.7km, 연결도로 2.2km)

이전기업 세제감면

국세감면

지원대상	지원사항	감면요건		관련규정
		현소재지	이전대상지역	
공장	대지/건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 특례	대도시내	대도시외	조세특례제한법 § 60
본사	대지/건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 특례	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	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	조세특례제한법 § 61
본사·공장 모두이전 (중소기업)	법인세 5년간 100% 그 후 2년간 50%감면	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(2년 이상)	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	조세특례제한법 § 63
공장 or 본사	법인세 5년간 100% 그 후 2년간 50%감면	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(3년 이상)	수도권밖 (광역시는 산업단지에 한함)	조세특례제한법 § 63의 2

지방세감면

지원대상	지원사항	대상지역	관련규정
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·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	취득세 50% 감면 / 재산세 35% 5년간 감면	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	지방세특례제한법 § 78, § 79, § 80
	취득세 75% 감면 / 재산세 75% 5년간 감면	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(충남도해당)	
	취득세 면제 / 재산세 5년간 면제 + 3년간 50% 감면	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본점이 대도시 외 지역으로(기존본점매각) 대도시 공장이 대도시 외 지역으로(기존공장폐쇄)	

☆참고사항

대도시 (국세감면해당)	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- 부산광역시(기장군 제외), 대구광역시(달성군 제외)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 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제외)
수도권	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(지방세감면에서의 대도시)	- 서울특별시 - 인천광역시 대부분 지역(강화군, 옹진군, 서구 일부지역, 인천경제자유구역·남동공단 제외) - 의정부시, 구리시, 남양주시(일부지역만 해당)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(반월특수지역 제외)



보조금지원

수도권기업 지방이전

* 지원대상

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

- ①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(mou) 등을 체결한 기업 중
- ②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
- ③ 수도권 대상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할 것
- ④ 수도권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, 공장,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
- ⑤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
- ⑥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일 것
- ⑦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전에 폐쇄 또는 완료할 것

국내복귀기업

* 지원대상

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

- ① 「국내복귀지원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 청산·양도 또는 축소시작 전 1년 평균 해외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
- ② 국내복귀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
- ③ 해외사업장을 청산·양도하는 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국내복귀를 위한 협약서 체결 또는 보조금 신청 이후 청산·양도할 것

신·증설 기업

* 지원대상

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

- ①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(mou)을 체결한 기업 중
- ②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
- ③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
- ④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, 주력산업, 지역집중유치 업종에 해당할 것
- ⑤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% 이상 일 것 단,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50명 이상, 대기업의 경우 100명 이상
- ⑥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단,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는 1억원 이상,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
- ⑦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(폐쇄, 매각, 임대, 축소 금지)

* 국내이전기업

지원대상(순수 지방비지원)

- ① (국내 이전기업)투자 금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공장, 본사, 연구소를 이전
- ② (신규투자기업)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공장
- ③ (대규모 투자기업) 1천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, 30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경우

